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2012년 3월 pp.357~386
한국세무학회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김병일** · 남기봉***

<요 약>

신탁법상 수익자는 신탁수익의 귀속자로서,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그러나 현행 신탁세제는 도관이론을 적용함에 따라 신탁유보이익의 과세이연과 신탁존속기간의 제한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위탁자가 신탁소득을 장기간 분배하지 않음에 따라 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익자의 조세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법상 수익자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행 신탁과세인 도관이론에 실제이론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은 신탁과세구조상 수익자에 대한 분배의무를 위탁자에게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존속기간의 제한규정과 신탁과세이론에 실제이론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신탁세제는 수익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구분을 신탁법을 준용하거나 세법상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지배력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는 수익자의 지정·변경권한여부, 수익자의 분배금액조정권한여부, 신탁수익이 위탁자의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현행 세법에서는 연속수익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술한 위탁자 지배력기준을 먼저 설정한 후, 이 기준에 따라 연속수익자의 과세범위를 정함으로써, 연속수익자의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신탁세제는 복수수익자에 관한 손익분배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손익분배기준을 개별수익자의 손익이 아닌 전체신탁재산손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비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비용과 손실비용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비용에 따라 손실비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탁과세제도가 신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수입수익자, 귀속권리자, 잔여재산수익자, 연속수익자, 복수수익자, 신탁존속기간

* 본 논문의 완성을 위하여 유익한 조언과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 bikim22@hanmail.net, 010-3344-4170, 주저자

*** 공인회계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박사과정, kbnam@hanulac.co.kr, 010-5364-9458,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2년 2월

1차수정일 2012년 3월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I. 서 론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제2항). 이러한 신탁은 회사와 비교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신탁의 역할을 회사를 포함한 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동신탁으로 활용되어 왔다. 즉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행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2000년대 주요국이 신탁을 글로벌 금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탁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령화인구의 증가와 기존 금융시스템 이외의 다양한 자산 및 자금운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신탁법을 전면개정하여 2012년 7월 26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현행 신탁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탁세제의 개정방향에 있어서 신탁을 납세주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위탁자 및 수익자에 대한 조세법률관계(최명근 2007, 305)¹⁾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수익자와 관련된 조세법률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익자는 수입수익자와 원본수익자(귀속권리자), 그리고 잔여재산수익자로 구분된다. 이들의 조세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신탁과세구조상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소득의 분배를 장기간 지연하여 수익자가 실제수익을 받지 못하는 형식적 수익자가 되어 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둘째, 신탁의 수익자는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원본수익자)가 있다. 현행 신탁세제는 이들의 정의규정과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신탁세제는 연속수익자에 대한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연속수익자는 위탁자의 지배력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탁세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넷째, 현행 신탁세제는 복수수익자에 대한 손익분배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탁법도 이러한 손익분배기준의 근거가 되는 공평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신탁법개정법률에는 공평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추상적·포괄적 규정으로서 이를 세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손익분배기준의 미비는 신탁의 당사자로 하여금 조세회피시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신탁법상 수익자관련 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법개정법률과 더불어 신탁세제를 개정하여 이에 대해 명확한 조세법률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신탁세제의 개편과정에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1. 선행연구의 검토

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본 논문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이를 통한 현행 신탁과세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김재진·홍용식(1998)『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과 홍용식(1999)“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탁에 관한 세법의 총칙규정의 신탁소득에 대하여 신탁도관이론에 따라 규정한 반면에 각론 규정에서는 신탁실체이론에 따라 신탁소득을 신탁상품의 구별 없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함으로써 법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 입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체계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신탁세제의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중교(2009)“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에서는 투자신탁에 관한 한 신탁도관설은 과세이연의 문제점이 있고, 신탁실체설 중 신탁재산설은 개인과 법인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하는 법체계와 충돌하므로 그 대안으로 최소한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신탁실체설 중 수탁자설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투지신탁의 경우 투자자에 불과한 수익자를 사업자라고 하여 납세의무의 주체로 삼는 것은 거래현실 및 법리에 맞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소득과세와 달리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보유세 모두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의 주체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김병일·김종해(2010)“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에서는 미국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신탁세제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저촉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을 납세주체로 볼 필요가 있고, 신탁재산의 원본 및 수익에 관한 구분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신탁세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탁세제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일(2010)“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신탁법 개정법률안 및 일본신탁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탁세제구조의 재검토·재구축을 통한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종해·김병일(2011)“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에서는 영국의 신탁세제 중립적 측면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신탁세제에도 신탁재산의 영구적 구속방지 및 신탁유보이익 과세규정

과 편법증여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소유자산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탁자의 조세회피 및 연속수익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일·김종해(2011) “신탁법상 위탁자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신탁법상 위탁자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위탁자 과세요건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하여 신탁소득의 경제적 수혜를 받는 상황, 신탁목적에 변경할 권한과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한이 있는 경우, 신탁원본 및 수익의 분배의 관여여부 등을 고려한 위탁자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중 김재진·홍용식(1998), 이종교(2009), 김병일·김종해(2010), 김병일(2010), 김종해·김병일(2011)은 신탁과세구조 및 신탁소득과세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신탁세제에 신탁설치이론을 가미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신탁유보이익의 과세이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신탁존속기간의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김병일·김종해(2011)는 위탁자의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지배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현행 신탁과세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탁자의 실질적인 지배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수익자의 정의 및 과세범위를 제안했다. 그리고 복수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이들의 손익분배기준을 개별수익자의 손익이 아닌 전체 신탁재산손익을 기준으로 설정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신탁의 일반이론과 우리나라 신탁과세구조

1. 신탁의 기본구조

가. 신탁의 개념과 성립요건

신탁이란 영미법에서 출현한 제도로서 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신탁의 설정취지는 수탁자의 도산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자를 보호하

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신뢰체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형성된 채권관계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뢰의무를 부여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며, 내용상 유연성을 통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결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angbein 1997, 179-185).

신탁의 법률관계는 계약이나 유언이라는 설정방식을 통하여 성립된다. 이러한 신탁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률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신탁행위 또는 신탁설정행위라고 부른다(田中實・山田昭(雨宮孝子補正) 1998, 39). 신탁의 성립요건은 신탁 재산・신탁이익・신탁객체가 특정되어야 하며, 수탁자에 관한 신탁의무부과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신탁의 당사자

(1) 위탁자

위탁자(settlor)는 신탁목적의 설정자이자 신탁행위의 당사자²⁾이며, 재산출연자의 지위를 가진다. 영미법의 사고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임함으로써 위탁자에 의한 신탁의 간섭을 최소화했다. 왜냐하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가 중복적으로 전개됨으로 인하여 신탁운용의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최수정 2007, 157). 반면에 현행 신탁법은 위탁자에게 인정하는 권한의 범위가 넓고, 위탁자의 권한의 대부분을 위탁자 사망 후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최동식 2006, 160) 상대적으로 수탁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신탁법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신탁법’(2012.7.26 시행)이라 한다 등³⁾에서는 수탁자에게 신탁의 변경, 합병・분할, 종료와 같은 중대한 사항이나 신탁목적에 반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합의할 것을 규정하여 위탁자의 권한을 한정하고 있다(안성포 2009, 100-103).

(2) 수탁자

수탁자(trustee)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신탁사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신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은 수탁자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다(명순구・오영걸 2005, 165).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의무는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공평의무 등이 있다. 이 중 선관주의의무는 수탁자의 재량권범위와 관련되고, 충실의무는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자를 위해서만 행해지는 의무로서 개정신탁법 등에서 이를 명문화했다. 또한 공평의무는 신탁재산의 수익 및 비용의 분배에 있어서, 수탁자의 자의적 분배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2) 계약신탁에서는 신탁계약의 일방당사자, 유언신탁에서는 단독행위인 유언의 작성자, 신탁선언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갖는다.
- 3) 법무부공고 제2009-164호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률 제10924호로 전면개정(2011. 7. 25)되어 신탁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수익자

수익자(beneficiary)는 수탁자, 신탁재산 등과 함께 신탁에서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이며, 신탁행위에 기인한 신탁이익을 향수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 수익자는 수입수익자(income beneficiary)와 귀속권리자로 구분된다. 수익자는 신탁법 및 신탁행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종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수익권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양도도 가능하다. 또한 수익권은 수익자 고유의 권리(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로서 수익자 지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복수수익자의 수익권은 서로 다른 수익권에 의하여 자기의 수익권을 제약받으며, 동종 수익권도 수량이나 비율에 의해 서로 제약된다. 한편 수익자는 신탁의 사무 처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나 신탁보수지급의무 등이 있다.

한편, 연속수익자란 신탁존속시 신탁의 제1수익자의 사망으로 이의 수익권을 부여받는 수익자(제2수익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수익권을 부여받는 자는 제1수익자의 법적상속인이 아니다.

2. 수익권과 수익자의 유형

가. 수익권

수익권은 신탁설정에 따라 수익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수익권의 권리내용에는 다양한 권리 또는 권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단순히 금전 등을 교부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이익을 누릴 권리·법원에 대한 청구권·신탁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담고 있다.⁴⁾

이와 같은 수익권은 크게 수입수익권과 원본수익권으로 나뉜다. 수입수익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말하고, 원본수익권은 신탁종료시에 잔여신탁재산을 수령할 권리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수입수익권과 원본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



위탁자가 갑이 2011. 1. 2에 수탁자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20년간 신탁재산운용 수익에서 매월 50만원을 수익자인 병에게 지급하고, 매월 50만원 초과분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도록 하며, 20년 후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잔존신탁재산을 정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 때 매월 50만원이 수입수익권이 되고, 이를 수령하는 자(병)가 수입수익자이고, 신탁종료 후에 잔여신탁재산, 즉 신탁원본을 수령할 권리가 원본수익권이고 이를 수령하는 자(정)가 원본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가 된다.

4) 임채웅. 2009.12.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275-276면 참고.

한편, 현행 신탁법상 수입수익권의 유형을 “배당을 받을 권리”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즉 수입수익권에는 이익이나 배당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임채웅 2009, 279). 임채웅(2009)에 의하면, 수입수익권을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익권은 포괄적인 수익권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수익권은 신탁기간 동안 수령할 수익자가 수령할 금액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 구체적인 수익권은 기본적인 수익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기본적인 수익권에는 확정이익뿐만 아니라 미확정수익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인 수익권은 [사례 1]의 수익자가 매월 수령한 50만원처럼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세제상 상속이나 증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원본수익자가 반드시 신탁종료 후에 신탁원본을 수령하는 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탁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신탁원본을 분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이나 영국의 신탁제도에서는 원본수익자뿐만 아니라 잔여재산수익자개념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수익자와 원본수익자 그리고 잔여재산수익자에 대한 개념과 이들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나 원본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수익자의 유형

(1) 수입수익자

수입수익자는 신탁설정에 따라 신탁존속기간동안 수탁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수익자의 수익권에 전술한 바와 같이 원본수익권이 배제된 자를 말하며, 수입수익자는 신탁설정에 의하여 원본수익자나 잔여재산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법적지위는 달라질 것이다.

(2) 원본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⁵⁾

원본수익자는 신탁종료 후에 잔여신탁재산(원본)을 수령하는 자나 신탁존속기간동안 신탁원

5) 개정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25. 전부개정; 2012. 7.26 시행)

신탁법개정법률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본을 분할하여 수령받는 자 즉 원본수익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원본수익자는 현행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은 법정신탁으로 전환되고 원본수익자는 법정신탁의 수익자가 됨으로서 신탁종료 전 수익자의 지위나 수익권의 의미가 달라 원래의 수익권으로 보기 어렵다(임채웅 280). 그러므로 수입수익자가 원본수익자가 될 때, 이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신탁기간동안 신탁원본을 분할하여 분배받는 자를 원본수익자로 볼 때, 현행 신탁법은 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잔여재산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는 신탁존속기간 동안 잔여신탁재산을 수령받기로 지정된 자나 지정될 자를 말한다. 그러나 개정신탁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지정된 자를 잔여재산수익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잔여재산수익자는 수입수익자나 원본수익자도 될 수 있고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다만,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개정신탁법 제101조 제2항).

한편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신탁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종료시에 잔여재산을 수령할 자로 지정여부에 된 경우를 잔여재산수익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로 볼 수 있다.

(4) 연속수익자

연속수익자란 수익자 A는 생존 중에 오로지 A만이 신탁이익을 향수하고, 그의 사망으로 남은 재산으로 B가 신탁이익의 향수자로 설정될 때 B는 A의 생전에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익자 A와 B를 말한다. 여기서 연속수익(successive interests)은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동일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보통 수익자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된다.

3. 우리나라 신탁과세구조

가. 신탁의 납세의무자

신탁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2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5조에서는 신탁이익을 신탁이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시킴으로서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서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서 신탁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위탁자인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에서는 신탁의 수익자가 불특정하거나 부존재시에는 해당 신탁소득의 귀속자를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보아 이들을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

나. 신탁과세대상 및 신탁소득산정방식

(1) 신탁과세대상

현행 세법상 신탁이익은 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금전외신탁에서 발생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⁶⁾ 다만, 공익신탁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⁷⁾ 신탁과세대상은 운용 이익을 금전으로 원금 및 수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인 금전신탁과 신탁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금전채권·부동산 등의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구성된 금전외신탁, 그 외에 금전채권신탁과 부동산신탁 등이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⁸⁾이 되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의 상당한 가액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판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나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로 보고 있다. 반면에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아직 부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신탁소득금액의 산정

신탁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익자단계가 아닌 신탁단계에서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소득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방법을 취하고 있고,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각 재산별로 소득원천설에 의한 과세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신탁소득금액산정 특례로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이 있을 때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46조의2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

6)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의2, 법인세법 제5조.

7) 법인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및 제52조.

8)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7-0-0-1 【상속재산의 범위】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

준 확정 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의 증여에 대한 소득금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산정된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일정한 경우⁹⁾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상품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며, 수입시기는 신탁단계가 아닌 수익자단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별로 각 세목에 따른 수입시기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법 하에서 신탁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전신탁을 주로 운용하는 신탁법인이나 개인신탁에게도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IV. 외국 신탁법상 신탁의 수익자 과세

1. 미국 신탁법상 수익자과세

가. 의 의

미국 신탁의 과세원칙¹⁰⁾은 조세회피방지 및 이중과세를 방지함과 동시에 신탁의 고유한 특성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인 유연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이나 유산(estate)은 “개별 납세의무자(trust as separate taxpayers)”로서 수익자와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납세주체이다. 즉 이는 실체이론을 도입한 근거가 된다. 둘째, 신탁과세제도는 도관적 접근(conduit approach)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신탁은 개인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연방세법(IRC) 제641(b)조는 “신탁이나 유산의 과세소득은 개인의 과세소득산정방식과 동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위탁자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에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과세원칙은 통하여 미국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특히 수익자와 관련하여 미국은 신탁을 납세주체로 봄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자가 수령한 분배금액 중 신탁의 과세분 만큼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신탁에 위탁된 자산의 성격과 수익자가 분배받는 소득의 성격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무상이전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의 판단기준은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미국의 수익자는 단순신탁의 수익자, 복합신탁의 수익자, 위탁자신탁의 수익자로 구분된다. 이 중 복합신탁의 수익자는 계층시스템(the tier system)에 의하여 계층(tier)-1과 계층(tier)-2수익자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개별지분규칙(separate share rule)에 의하여 각 수익자의 지분율을 개별 실체로 보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분산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하여 미국의 수익자는 수입수익자와 원본수익자 그리고 잔여자산수익자로 구분된다. 수입수익자는 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고, 원본수익자나 잔여자산수익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신탁법상 수익자 과세

(1) 소득세 및 법인세

일반적으로 수입수익자의 총소득금액은 신탁의 배당가능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고, 신탁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별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다만, 수입수익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제로 분배받았는가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분율에 의하여 분배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음은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수익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무처리 규정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수입수익자의 소득의 성격은 신탁의 배당가능수익의 성격과 동일하다.

둘째, 2명 이상의 수입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체 배당가능수익을 전체 수입수익자의

10) 여기서 신탁과세의 기본원칙은 유산에도 적용된다. 또한 미국의 과세방식은 일반적으로 투북(two book)시스템이지만, 신탁에 대하여 원북(one book)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의 과세방식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분배금액 중 각 수입수익자의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소득별로 구분하여 분배된다. 다만, 배당가능수익이 분배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분배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입수익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별로 구분하여 분배된다. 이러한 배분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소득을 배분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을 배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조세채무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신탁이 수입수익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수입수익자가 현금으로 현물을 취득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단순한 자산교환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은 수입수익자에 분배한 현물자산을 min(공정가액(fair market value : FMV), 조정된 기초가액(adjusted basis))으로 분배공제할 수 있고, 수입수익자는 신탁의 선택에 따라 분배금액이 달라진다.¹¹⁾ 이러한 선택규정은 *Kenan v. Commissioner*의 판결¹²⁾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신탁이 분배시점에 현물자산의 공정가액이 조정된 기초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이득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현물자산의 공정가액은 분배공제금액과 동일하고, 수입수익자는 신탁이 인식한 이득과 신탁단계에서 조정된 기초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가액(base)으로 하여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반면에 신탁이 위의 초과금액을 이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은 조정된 기초가액으로 분배공제하고 수입수익자는 이 금액을 총소득금액에 포함시킨다. 그 후에 수입수익자가 현물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 선택규정은 수탁자로 하여금 증가된 금액만큼을 수익자단계나 신탁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분배가 증가된 자본이득자산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때 인식한 자본이득은 전기과세연도의 자본손실과 상계된다. 다만, 이러한 선택규정을 적용한 신탁은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철회할 수 없다.¹³⁾ 그러나 이 규정¹⁴⁾은 연방세법 제 663(a)조의 분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¹⁵⁾

신탁의 종료시점에 신탁잔여재산, 결손금(NOL), 자본손실이나 자본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료과세연도에 신탁재산을 승계받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이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

11) IRC § 643(e)(2).

12) *Kenan v. Commissioner* 114 F.2d 217 (2d Cir. 1940). 위 판례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수증자에게 분배하고 있어서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에 이를 자본이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과세관청은 이를 전부 자본이득으로 보았지만, 위원회(the board는 조세불복심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됨)에서는 이를 일반소득으로 보았다. 그러나 수탁자는 현물분배는 자본이득도 일반소득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탁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 1934년 The Revenue Act의 연방세법 제111조에서 이와 관련된 소득구분규정을 제정했지만, 신탁과 수익자의 동의를 통한 조세회피가 감소되지 않아서 1954년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세법 제652(a)조에서는 배당가능수익에 따라 신탁의 분배공제액을 결정하고 수익자는 총소득금액을 신고할 것을 정하고 현재와 같은 선택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13) IRC § 643(e)(3).

14) IRC § 643(e).

15) IRC § 643(e)(4).

(2) 유산세 및 증여세

신탁과 관련된 유산세(estate tax) 및 증여세(gift tax)는 무상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신탁보다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주로 원본수익자(귀속권리자)나 잔여재산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미국은 1976년에 미국의회가 개별적인 유산세 및 증여세를 통일거래세시스템(unified transfer tax system)으로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는 통일세율표(unified rate schedule), 사망과세기반에 포함된 부과대상 증여(inclusion of taxable gifts in the death tax base), 통일공제(unified credit)이다.

미국은 유산세 및 증여세측면에서 볼 때, 증여자나 피상속인의 지배권과 통제권의 중단시기를 중요한 판단시점으로 보고 있다. 즉 증여자나 피상속인의 지배권과 통제력이 상실한 시점에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신탁과 관련된 유산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① 전술한 바와 같이 증여자의 지배권과 통제권의 중단시기에 따라 증여과세여부가 결정이 된다.¹⁶⁾ 즉 이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는 취소가능신탁이나 취소불가능신탁이 수익자에게 신탁소득을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한 소유권이전(거래)으로 보지 않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② 생애유산 또는 유산권(life estates)과 잔여이익(remainder interests)과 관련된 부분이다. 예를 들어,¹⁷⁾ 한 개인이 신탁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생애기간동안 신탁의 소득을 보유할 권리가 있고 이 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재산을 다른 자에게 이전할 것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에서 양도자(위탁자)는 유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잔여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유산권은 생애기간 동안 이용하거나 소득을 취득할 권리로써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고, 잔여이익도 그러하다. 다만, 잔여이익이 가족 구성권에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산동결(estate freeze)¹⁸⁾효과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연방세법 제2514조는 증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지명권의 행사(exercise of a general power of appointment)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명권은 한 인(人)이 신탁에 자산을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자산을 수령할 특정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지명권의 소유는 자산의 소유자와 동일한 이익을 갖게 한다. 잠재적인(potential) 증여세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지명권을 행사할 자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증여는 한 인(人)이 일반적인 지명권을 행사하거나 자산을 수령할 다른 자를 지명할 때 발생한다(Anderson et al. 2008, C12-15).

16) Reg. § 25.2511-2(b)-(c).

17) Kenneth E. Anderson · Thomas R. Pope · John L. Kramer, 2008.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2008*, Prentice Hall, p.C12-11.

18) 유산동결효과의 주요 요지는 IRC §§ 2701-2704의 내용을 참고.

④ 미성년자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증여자가 21세 이하의 미성년 수익자에게 신탁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⁹⁾

둘째, 유산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① 보유된 유산권의 거래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²⁰⁾ 이 경우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피상속인 소득에 대한 권리나 자산을 향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피상속인이 소득을 수령할 자나 자산을 향유하거나 소유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이다.

② 반환이익(reversionary interest)이 있는 경우이다. 반환이익은 신탁종류 후에 신탁재산이 위탁자(양도자)에게 되돌아 올 때를 말하며, 위탁자는 반환이익이 있다고 본다. 즉 반환이익은 위탁자에게 반환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연방세법 제2037조는 피상속인이 다른 인(人)이 자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더 살아남을 것을 명기하고 피상속인의 반환이익의 평가가액이 이전된 자산가액의 5%를 초과한다면, 이 모두가 피상속인의 유산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③ 취소가능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거래는 취소가능신탁에서 볼 수 있고, 연방세법 2038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처음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위탁자(양도자)가 사망시점에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동조는 유산세가 부과되는 2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²²⁾ 이는 주로 위탁자신탁과 관련된 부분이다.

④ 일반적인 지명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는 증여세에서 언급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피상속인이 지명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유산가액에 포함된다. 즉 피상속인이 이를 행사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건강, 지원, 관리, 교육과 같은 목적으로만 행사되는 권리인 확정된 기준(ascertainable standard)에 해당하는 것은 유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국 신탁법상 수익자과세

가. 개 요

영국의 과세구조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증여세 포함) 그리고 상속세로 크게 나뉜다. 신탁세

19) IRC § 2503(c).

20) IRC § 2036.

21) A가 B에게 생애기간 동안 자산을 양도하고, 그 후에는 C에게 양도한다. 이 자산이 A가 살아 있는 동안에 B나 C가 사망한 시점에 반환될 것이다. A가 B나 C의 사망시점에 살아있지 않다면, 이 자산은 D에게 이전되거나 D가 사망했다면, 기부단체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D는 자산을 수령하기 위하여 A보다 더 오래 생존해야 한다. A의 반환이익의 가액이 그 자산가액의 5%를 초과한다면, 이 자산은 A의 유산에 포함된다. 포함된 금액은 A의 반환이익의 평가가액이 아니지만, 사망일시점의 자산가액에서 B와 C의 유산권을 차감한다.

22) Anderson et al. op. cit., C13-13 사례 C13-21 및 C13-22 참고.

제도 이러한 분류에 따라 동일한 과세구조를 갖고 있다. 영국도 미국처럼 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어서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이 가미된 형태이다. 다만, 미국과 달리 신탁법의 유형에 따른 과세방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영국도 미국처럼 이중과세방지 및 신탁의 특성인 유연성이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신탁세제가 설정되어 있다.

영국의 소득세 산정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²³⁾ 즉 일반적인 소득세산정방법과 과세풀(tax pool)에 의한 산정방법이 있다. 과세풀에 의한 산정방법은 일반적인 소득세산정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방법의 차이는 신탁유보이익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이득세=자본이득-연간면세금액-각 감면금액’을 통해 산정된다. 자본이득세 산정방법은 신탁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아서 소득세산정방법보다 간편하다. 상속세는 현금, 토지나 건물 등을 상속세부과대상으로 보며, 이 자산 중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산인 ‘배제된 재산(excluded property)’²⁴⁾이 있다. 이를 고려한 상속세액에서 상속세 한계금액(inheritance tax threshold)이나 영세율구간(nil-rate band)인 £325,000(2010/11과세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권리소유신탁, 재량신탁(관련재산신탁) 및 누적 및 관리신탁이 있다.

나. 수익자 과세

(1) 소득세법상 수익자 과세

수익자는 신탁자의 과세금액을 제외한 순소득금액을 분배받아 개인·법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이러한 소득에는 향유될 소득(enjoyment income)을 포함하지 않는다.²⁵⁾ 일반적으로 수익자는 신탁계약이나 비율분배방식(pro-rata system)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는다. 또한 수익의 배당소득공제 여부는 신탁자의 그로스-업(gross-up)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그로스-업 소득은 신탁세율에 의하여 재량적으로 지급된 실제금액으로써,²⁶⁾ 이 소득은 수익자의 과세소득금액의 일부가 되고, 배당세액공제는 수익자의 개인적 조세채무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신탁이 그로스-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수익자와 관련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자는 수령한 신탁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그로스-업 세액공제금액이 수익자의 조세채무를 초과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셋째, 기본세율구간의 수익자는 신탁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납부세액은 없으며, 해당 소득이 50%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기본세율구간의 수익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넷째, 고율세율(40%)의 수익자는 추가적인 납부세액은 없으며, 해당 소득이 50%의 세액

23) Matthew Hutton. 2008. *Tolley's UK Taxation of Trusts 18th ed*, LexisNexis, pp85-86 and 87-92. 참고

24) 배제된 재산은 상속세법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

25) ITA 2007 § 493(2).

26) ITA 2007 § 494(2).

공제를 받았다면 기본세율구간의 수익자와 마찬가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섯째, 추가세율(50%)이 적용되는 수익자는 수정된 세액공제로 소득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또한 신탁유형별 수익자에 관한 일반적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다(ENSORS 2010, 8). 첫째, 권리소유신탁의 수익자는 분배소득이 배당소득 또는 그 밖으로 소득에 따라 10%의 배당세액공제나 2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둘째, 재량 또는 누적 및 관리신탁의 수익자는 2010/11부터 분배소득에 대하여 항상 50%세액공제를 받는다. 셋째, 수익자가 영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거주자신탁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자본이득세법상 수익자 과세

수익자는 직접적으로 신탁에 관한 지분(이익)을 처분할 때와 조세회피규정에 해당하는 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부담한다. 수익자의 조세채무는 그들이 신탁으로부터 수령한 자본금액을 한도로 한다. 매년 10%의 가상이익(notional interest)²⁷⁾은 신탁의 이익발생시기와 수익자에게 자본(원금)을 지급한 시기의 차이로 발생한 지체(delay)세금으로 이를 가산한다(ENSORS 11).

(3) 상속세법상 수익자 과세

영국의 상속세 과세대상 신탁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신탁이 해당 재산을 보유한 후 이를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²⁸⁾ 즉 승계할 자를 위한 신탁, 어떠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되기 위한 신탁, 유보소득을 위한 신탁, 유보초과소득과 관계없이 수탁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권한이 있는 신탁, 연금펀드나 다른 정기적인 지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대부분 재량신탁이나 권리소유신탁의 수익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수익자가 상속세를 부담하는 수익권은 다음과 같다.

수익소유권(interest in possession)이 있는 경우와 수익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동일한 자에 의하여 연속수익(series interest)을 향유하는 수익권을 말한다.²⁹⁾ 또한 적격수익소유권으로서 2006년 3월 22일에 존재하는 생애수익, 2006년 3월 22일 이전에 설정된 연금, 연속거래수익, 즉각적인 사후이익, 무능력 미성년자신탁이나 장애인의 수익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직접사후이익(Immediate Post-Death Interest : IPDI)으로서 재정법 2006에 의하여 상속세법 1984 제49A조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신탁의 설정은 유언장이나 유언장이 없는 규정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 수익소유권에 대한 수혜적 자격이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신탁재산은 수익소유권이 발생한 이후로는 유족인 장애인(bereaved disabled)신탁에 속하지 않는다.

27) 'notional interests'란 기업이 자기자본을 자사에 투자할 때 주는 세제 혜택으로 자사에 투자한 자기자본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가상적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28) IHTA 1984 § 43.

29) IHTA 1984 § 53(2).

이와 같은 수익권은 다음과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달리 세무처리하고 있다. 첫째, 2006년 3월 22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인 경우이다. 즉 권리소유신탁의 수익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모든 신탁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가 사망한 때, 신탁재산의 가액은 수익자의 유산으로 보고, 영세율구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둘째, 2006년 3월 23일 이후에 설정된 신탁인 경우이다. 신탁재산이 신탁에 남아 있는 경우, 수익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일본 신탁법상 수익자과세

가. 의 의

일본의 신탁세제는 2007년에 개정을 통하여 수익자등과세신탁, 법인과세신탁, 집단투자신탁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수익자등과세신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신탁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고, 과세방식은 신탁이 아닌 수익자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과세신탁의 과세방식은 신탁 즉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집단투자신탁도 기본적으로 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이중과세를 방지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수익자등과세신탁의 수익자에게 과세하지만, 법인과세신탁은 신탁소득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며, 수익자는 세후소득을 분배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신탁도관이론에 신탁실체이론을 가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신탁의 수익자를 크게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 그리고 잔여재산수익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수익자는 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반면 귀속권리자나 잔여재산수익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한 일본은 연속수익자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일본의 신탁세제는 수익자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수익자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신탁법상 수익자 과세

(1) 소득세 및 법인세

(가) 수익자등과세신탁의 수익자과세

수익자등과세신탁은 기본적으로 신탁도관이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소득에 대하여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러한 수익자의 유형은 신탁존속 중 수익권이 있는 수입수익자와 신탁의 종료와 청산시 신탁잔여재산의 귀속자³⁰⁾로서 신탁행위에서 잔여재산의 급부를 내용으

30) 일본 신탁법 제182조.

로 하는 수익채권에 관한 수익자를 ‘잔여재산수익자’와 신탁행위에 의해 잔여재산을 귀속하는 자를 ‘귀속권리자’로 구분된다. 또한 신탁의 변경권한을 실제로 보유하고, 신탁재산의 급부를 받는 자를 ‘의제수익자’라 하고, 수익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³¹⁾

또한 수익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의 전부를 각각의 수익자가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갖게 되며, 각각 자신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³²⁾ 따라서 수익자등의 권리는 공유·독립부분마다 각자가 가질 권리의 비율을 따른다.

(나) 법인과세신탁의 수익자과세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는 각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부채.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자로 간주하여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과세신탁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고, 수익자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또한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의 수익자로 된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수탁법인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등을 인계받는 것으로 하고 그 인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액은 그 수익자의 총수입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³³⁾ 이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상당액의 수증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또한 신탁의 위탁자가 그가 소유하는 자산을 신탁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수익자 등으로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자 등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³⁴⁾

(2) 상속세 및 증여세

(가)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신탁의 수익자 등으로 된 경우

신탁의 효력이 발생된 시점에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당해 신탁의 수익자 등(신탁을 변경하는 권한을 가지는 특정 위탁자를 포함)으로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당해 신탁에 관한 권리를 위탁자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³⁵⁾

수익자 등이 존재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당해 신탁의 일부의 수익자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이미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인 자가 당해 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새로이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의 일부의 수익자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

31) 일본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32) 일본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33) 일본 소득세법 제67조의3 제2항.

34) 일본 소득세법 제67조의3 제3항.

35)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1항.

에 이익을 받는 자는 당해 이익을 당해 신탁의 일부의 수익자였던 자 등으로 부터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³⁶⁾ 수익자등이 존재하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당해 신탁의 잔여재산의 급부를 받아야 할 또는 귀속될 자는 당해 급부를 받아야 할 또는 귀속 될 자로 된 때에 당해 신탁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³⁷⁾

(나) 수익자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의 특례

수익자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신탁의 수익자로 되는 자가 당해 신탁의 위탁자의 일정한 친족인 경우에는 당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당해 신탁의 수탁자는 당해 신탁의 위탁자로부터 당해 신탁에 관한 권리를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³⁸⁾

수익자등이 존재하는 신탁에 대하여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의 다음 수익자등으로 된 자가 당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된 때의 위탁자 또는 다음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의 이전의 수익자등의 친족인 때는 당해 수익자등이 부존재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때는 당해 신탁의 수탁자는 다음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의 이전 수익자등으로부터 당해 신탁에 관한 권리를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³⁹⁾

4. 시사점

외국 신탁법상 수익자과세는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비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수익자가 부존재하거나 미지정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 무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부과가 가능한 것은 신탁제도에 신탁실체이론을 도입한 결과로서, 이들 국가에서는 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 그리고 잔여재산수익자에 대한 정의와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연속수익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설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수수익자가 존재할 때 손익분배기준을 공평의무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탁과세구조 및 수익자와 관련된 조세법률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신탁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6)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3항.

37)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4항.

38)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4 제1항.

39)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4 제2항.

V.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탁과세구조에 의한 수익자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신탁과세구조는 신탁도관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신탁법상 적절한 과세이론이지만, 이로 인하여 과세이연처럼 조세회피시도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외국은 신탁실체이론을 가미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외국은 위탁자나 수익자 외에 신탁을 납세주체로 인정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신탁법은 신탁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신탁재산이 영구적으로 구속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신탁세제는 신탁소득에 대한 분배를 임의규정으로 둠으로써, 신탁소득을 장기간 유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행 신탁과세구조는 수익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신탁존속기간제한규정의 부재는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지배력을 장기간 유보하는 조치로서, 수익자의 법적인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즉 위탁자는 형식적으로 수익자를 둔 채, 장기간 신탁소득을 수익자에게 분배하지 않음으로서, 신탁제도의 취지를 침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탁과세이론에 신탁실체이론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즉 신탁을 하나의 권리주체로 보아서, 신탁을 납세주체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탁소득이 발생한 경우, ① 수익자가 존재하거나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실제로 신탁소득을 분배받지 않더라도 수익자의 지분을 만큼에 대하여 신탁에게 과세하고, 실제로 수익자가 분배받는 시기에 신탁이 납부한 세액 만큼에 대하여 수익자의 분배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② 수익자가 부존재하거나 미지정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안에 따라 신탁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현행 세법상 수익자가 부존재하거나 미지정된 경우에 위탁자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부분에 대한 조세법률관계의 불명확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신탁과세구조는 신탁유형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를 토대로 각 유형별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방법은 다양한 경제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신탁유형이 출현될 경우에 이를 세법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세법상 독자적인 신탁과세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⁴⁰⁾ 외국의 신탁법상 신탁유형을 조세법상으로 재분류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신탁세제에서 신탁을 크게 일반신탁과 위탁자신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위탁자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신탁의 조건, 즉 위탁자의 지배력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신탁유형은 신탁법상 분류와 관계없이 위탁자신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신탁에 대한 분류는 미국의 분류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

40) 미국은 세법상 신탁을 단순신탁, 복합신탁, 위탁자신탁으로 대분류하여 과세하고 있고, 일본도 수익자과세신탁, 법인과세신탁으로 대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지만, 법체계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분류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신탁세제는 신탁유형을 수익자등과세신탁과 법인과세신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두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수익자등과세신탁은 수익자 등을 납세의무자로보고 있고, 법인과세신탁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방식의 차이점은 신탁에 대한 독립된 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법인과세신탁에서 개인이 위탁자나 수익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조세정책적 접근이고,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탁에 관한 독립적인 세율구조의 설정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신탁과세구조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실체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신탁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봄으로써, 위에서 지적한 문제인 과세이연 및 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하는 부분 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과 수익자에 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배당세액공제를 인정하거나 미국처럼 신탁에게 부과된 세액부분을 수익자에게 분배할 때,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탁세제상 신탁을 위탁자신탁과 일반신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일반신탁도 미국처럼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신탁소득분배의무조건을 신설하여 수익자에게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에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탁과세구조의 허점을 보완하여 신탁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원본수익자)에 관한 과세

현행 세법은 수익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신탁법에서도 수익자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익자는 수익권을 갖는 자를 의미한다. 이 수익권은 단순한 1회성의 채권이 아니라 신탁관계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신탁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많은 측면에서 특히 수탁자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수익권을 갖는 자는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 그리고 잔여재산수익자가 있다.

수입수익자는 신탁존속기간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신탁약정에 의하여 분배받는 자로 볼 수 있다. 또한 귀속권리자는 신탁재산을 분배받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귀속권리자는 위탁자의 사망이나 신탁종료 후에 신탁재산을 분배받는 자가 될 것이다. 잔여재산수익자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소득·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현행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물건의 거래형태나 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

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 간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문제를 차단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은 개정신탁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수익자관련유형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탁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신탁의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고, 위탁자에 의하여 각 수익자 간 분배금액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과세당국은 적절한 조세부과를 하기 어려울 수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각 수익자의 정의를 신탁법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수익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입수익자는 신탁원본을 수령하지 않는 자로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입수익자는 신탁종료 후에 신탁원본을 수령하는 경우는 귀속권리자가 되며, 잔여재산수익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귀속권리자와 유사한 강학상 및 신탁실무상 원본수익자는 신탁종류 후에 신탁재산을 분배받는 자이고, 이는 수입수익자의 수익권인 수입수익권(신탁계약에 의해 분배받는 권리)의 대응되는 개념이다.⁴¹⁾ 이렇게 볼 때, 귀속권리자의 정의는 위탁자가 신탁종료시점을 장기간 이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현행 규정보다 좀 더 넓게 정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이나 영국처럼 신탁종료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사망이나, 실제로 신탁원본을 분배받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귀속권리자는 신탁종료 후나 신탁존속 중에 신탁원본을 수령한 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위탁자가 수익권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위탁자 신탁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위탁자가 수익권을 지배할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형식적으로 수익자에게 분배될 지라도 위탁자가 실질적인 수령자이므로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탁자의 수익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기준을 우선 설정한 후에 수익자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익권에 대한 위탁자의 지배력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탁존속기간동안에 위탁자가 수입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한이 있는 경우, ② 신탁존속기간동안에 수익자에게 분배될 금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③ 신탁종료시점에 귀속권리자를 지정·변경할 권한이 있는 경우, ④ 신탁재산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위탁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위탁자신탁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한 수익권이 수익자에게 이전될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41) 中央信託銀行信託研究會, “信託受益權と強制執行(下)” 金融法務事情 No.1257, 1990.6.25, 28면.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이러한 수익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를 신탁이 아닌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준으로 수익자의 미지정이나 부존재시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위탁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수익권이 위탁자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세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현행 세법상 신탁에서는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 간에 소득이전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수익자의 해당 세목은 법인세·소득세인 반면 귀속권리자의 해당 세목은 주로 자본이득인 상속세 및 증여세이다. 이러한 소득성격 및 세율의 차이가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 간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귀속권리자와 수입수익자가 존재할 때는 귀속권리자의 증여세 및 상속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수익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분배하여 최초 신탁설정시 원본가액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귀속권리자의 증여세 및 상속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은 세법에서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김종해 2011, 187).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탁과세방식을 채택함과 동시에 원본 및 수익구분기준을 정립하여 이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신탁소득관련 내용에 관한 관리를 신탁단계에서 일원화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세무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김종해 187-188).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을 통하여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간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세법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연속수익자에 관한 과세

연속수익자란 수익자 A는 생존 중에 오로지 A만이 신탁이익을 향수하고, 그의 사망으로 남은 재산으로 B가 신탁이익의 향수자로 설정될 때 B는 A의 생전에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익자 A와 B를 말한다. 여기서 연속수익(successive interests)은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동일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보통 수익자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연속수익을 이 전받을 수 있는 자는 수입수익자와 귀속권리자(원본수익자)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 신탁법상 이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행 세법도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김병일 2010, 340-341). 즉 최초 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위탁자였던 자의 사망에 기인하여 최초수익자가 된 경우에는 유증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제2의 수익자도 최초수익자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

초수익자의 사망으로 다음 수익자로 된 경우에는 유증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할 것이다. 그 수익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된다. 이러한 세무처리는 위탁자가 수익권 등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탁자에 대한 신탁 등의 실질적인 지배력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연속수익자에게 이러한 세무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위탁자의 신탁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위탁자의 지배력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후 연속수익자에 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제시하겠다.

첫째, 연속수익자와 관련된 세무처리는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영향력 여부에 따라 달리 질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지배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탁자의 지배력기준은 신탁재산 등의 완전한 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완전한 이전은 증여의 발생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증여가액을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력기준은 전술한 수익권의 지배력기준과 다르지 않다. 즉 수익권 지배력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① 위탁자(또는 증여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우, 즉 특정한 상황의 모든 사실을 고려한 후에, 그 증여행위의 전부나 일부가 불완전 또는 완전하게 성립될 수 있다.⁴²⁾ ②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경우, ③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 즉 잔여이익은 한 개인이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고 생애기간 동안 신탁소득에 대한 권리가 있고 양도자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다른 개인이 수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양도자는 생애유산 또는 유산권을 보유하게 되고 승계권 이익을 준다. ④ 위탁자가 특정기간동안 다른 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거나 신탁종료시점에 신탁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이 경우에 위탁자 또는 증여자는 승계권 이익을 보유하게 되고, 다른 자는 특정기간의 이익(a term certain interest)⁴³⁾을 수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을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맞게 조정 및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처럼 신탁법이 아닌 세법에서 독자적으로 신탁유형을 정비하고, 그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탁자신탁을 신설하여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탁자의 지배력에 의한 연속수익자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즉 귀속권리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수입수익자는 주로 소득세

42) Reg. § 25.2511-2(b).

43) 특정기간의 이익이란 특정인이 특정기간동안 신탁재산에 발생한 이익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 이익을 수령받게 될 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이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령할 권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재산(이익)은 위탁자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 미국은 특정기간의 이익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 Anderson et al. op.cit., p.C12-11. 또한 이러한 방식의 신탁은 영국의 사전소유자신탁과 유사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종해·김병일, 2011.9.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165-166면 참고.

및 법인세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속수익자가 수입수익자인 경우이다. 즉 제1수입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를 승계하는 제2수입수익자는 현행 사법상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 받는다. 그러나 제1수입수익자의 수익권이 완전히 이전 즉 위탁자의 지배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는 이러한 세무처리는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수익권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위탁자의 지배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익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고, 제1수입수익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익권의 이전은 제1수입수익자의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질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증여(gifts)나 상속(estates)의 발생은 증여자나 피상속인이 완전히 소유한 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Anderson et al. C12-2). 따라서 위탁자의 지배력여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연속수익자에 대한 적용세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탁자의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입수익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위탁자의 지배력이 있는 수익권에 대한 연속수익자의 부과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위탁자가 지배력이 있는 수익권에 대한 이전은 위탁자에 의한 수입수익자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처리는 수익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아니므로 과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행정적으로 수익자변경을 과세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연속수익자 및 위탁자에게 부여하여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연속수익자가 귀속권리자인 경우이다. 귀속권리자는 신탁종료시점이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원본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수익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귀속권리자의 수익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속수익자가 귀속권리자인 경우는 수익권의 권리확정시점과 전술한 위탁자의 지배력을 기준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즉 ① 수익권의 권리가 확정되고 위탁자의 지배력이 귀속권리자의 수령 이후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귀속권리자에게 해당 수익권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수익권의 권리가 확정되었지만, 위탁자의 지배력이 영향을 미칠 때는 귀속권리자가 변경되더라도, 위탁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③ 수익권이 미확정되고, 위탁자의 지배력이 행사될 경우에도 ②와 마찬가지로 세무처리되는 것이 타당하고 본다.

셋째, 이러한 연속수익자에 처리는 ‘뒤를 이은 유증’이 상속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⁴⁴⁾으로 인하여 사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원인은 수익자가 미확정된 상태로 무한정 지속되는 유언신탁의 연속수익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적을 반영하여 개정신탁법

44) 최동식, 앞의 책, 343-344면. 참조. 최동식은 ‘뒤를 이은 유증’에 대하여 민법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은 유류분 제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대용신탁 중 후계자 유증형의 수익자연속인신탁을 유효하다 보고 있다(송 훈 2009, 50).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근본적인 원인인 개정신탁법상 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최동식 344-345)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탁존속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속수익자에 대한 세무처리는 위탁자의 지배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자의 지배력기준이 설정되어야만, 연속수익자에 대한 명확한 세무처리를 할 수 있고, 신탁존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사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복수수익자에 관한 과세

단일신탁의 복수수익자는 서로 다른 수익권에 의하여 자신의 수익권이 제약을 받고, 동종의 수익권은 수량적·비율적으로 서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수익권 상호제약은 실질적으로 신탁이익의 총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신탁법은 이러한 분배기준과 관련된 공평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중해 181). 그러나 개정신탁법 제35조에서 공평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법률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탁계약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수익자간 분배금액이나 분배비율을 조정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단일신탁에 복수의 수입수익자가 있는 경우이다. 신탁은 유연성과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익자 간 수량이나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탁자가 수익자의 수익이나 비용을 달리 규정함에 따라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단일신탁에 복수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일방이 신탁의 모든 수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익자가 신탁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할 때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신탁계약시점에서 각 수익자에게 설정된 수익비율이나 손실비율의 변경시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이를 과세당국의 심사를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적절한 사유의 예로서, 수익이나 손실비율의 변경이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수익자 간 수익비율과 비용비율을 달리 설정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업기업과세특례에서 조합원의 수익비율과 비용비율을 달리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왜냐하면 사법상 조합이나 신탁을 합유체로 보고 있고, 각 제도의 특성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익자의 손익분배기준은 공평의무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손익분배기준은 특정수익자간의 유리·불리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신탁재산에 유·불리함을 기준으로

공평의무를 판단한다. 또한 신탁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수탁자에게도 공평의무가 적용된다. 이 경우의 공평의무는 수탁자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이연갑 2009, 39). 손익분배기준은 미국의 ‘수익비율규정(unitrust)방식과 형평적 재배분(equitable reallocation)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익비율규정방식은 당기 회계기간 중에 신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 원본에 편입된다. 그 후 일정한 지출공식(예컨대, 원본의 5% 상당액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2%를 더한다든지 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당기의 수익’으로서 분배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형평적 재배분방식은 원칙적으로는 형식에 따라서 ‘원본’ 및 ‘수익’을 구별하는 전통적인 관행에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수탁자는 형평적 재배분을 행하게 된다. 즉 전통적인 방식이 현재의 수입수익자와 잔여권의 수익자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공평취급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수입을 재배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Langbein 1996, 669).

따라서 손익분배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손익분배기준은 개별 수익자의 손익이 아닌 신탁의 전체손익을 기준으로 분배방법을 설정해야 하며, 미국의 형평적 재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기준은 수입수익자든 귀속권리자든 간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요약

신탁법상 수익자는 신탁수익의 귀속자로서,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그러나 현행 신탁세제는 도관이론을 적용함에 따라 신탁유보이익의 과세이연과 신탁존속기간의 제한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위탁자가 신탁소득을 장기간 분배하지 않음에 따라 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익자의 조세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법상 수익자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행 신탁과세인 도관이론에 실체이론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은 신탁과세구조상 수익자에 대한 분배의무를 위탁자에게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존속기간의 제한규정과 신탁과세이론에 실체이론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신탁세제는 수익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구분을 신탁법을 준용하거나 세법상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지배력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는 수익자의 지정·변경권한여부, 수익자의 분배금액조정권한여부, 신탁수익이 위탁자의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현행 세법에서는 연속수익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술한 위탁자 지배력기준을 먼저 설정한 후, 이 기준에 따라 연속수익자의 과세범위를 정함으로써, 연속수익자의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신탁세제는 복수수익자에 관한 손익분배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손익분배기준을 개별수익자의 손익이 아닌 전체신탁재산손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비율과 손실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비율에 따라 손실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하여 신탁법상 수익자의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함으로써, 신탁제도의 정착에 세제가 도움이 되고 동시에 신탁세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병일 · 김종해. 2010.4.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조세연구 제10-1권 : 332-337.
- _____. 2010.8.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과세제도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2권 : 303-350.
- _____. 김종해. 2011.12. “신탁법상 위탁자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3권 : 281-329.
- 김종해. 2011. “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김병일. 2011.9.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 141-173.
- 김재진 · 홍용식. 1998. 7.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명순구 · 오영걸. 2005.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 박동규. 2004.3. “신탁 및 신탁에 관한 과세제도”, 월간조세 통권 제190호 : 47-51.
- 송 훈. 2009.10. “새로운 신탁상품 등장으로 활성화되는 일본 신탁시장과 시사점”,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 안성포. 2009.10.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48호 : 100-103.
- 이연갑. 2009.10.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48호 : 30-52.
- 이종교. 2009.12.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 통권 제639호 : 318-359.
- 임채웅. 2009.12.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 273-304.
- 최동식. 2006. 『신탁법』, 법문사.
- 최명근. 2007. 『세법학총론』, 세경사.
- 최수정. 2007. 『일본신탁법』, 진원사.
- 홍용식. 1999. “신탁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2집 제2호 : 149-178.
- ENSORS. 2010. *Taxation and the uses of trusts*, http://www.ensors.co.uk/cms/filelibrary/Taxation_and_the_uses_of_trusts.pdf : 1-17.
- John H. Langbein., 1996. *The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and the Future of Trust Investing*, Faculty Schorship Series, http://digitalcommons.lawyale.edu/fss_paper/486.
- _____, 1997.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107 Yale L. J.
- Kenneth E, Anderson · Thomas R. Pope · John L. kramer, 2008.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2008*, Prentice Hall.
- Matthew Hutton. 2008. *Tolley's UK Taxation of Trusts 18th ed*, LexisNexis.
- 田中實 · 山田昭(雨宮孝子補正). 1998. 『改正信託法』, 學陽書房.
- 中央信託銀行信託研究會. 1990.6. “信託受益權と強制執行(下)” 金融法務事情 No.1257.

A Study on the Beneficiary Taxation for the Purpose of Trust Law

Kim, Byungil* · Nam, Kibong**

〈Abstract〉

By the current trust tax law, The beneficiary as the person who is involved with its earning is a major tax payment obligor. However, the current trust taxation applied the conduit theory which allows the grantor would not distribute their trust earnings to beneficiary, due to tax deferral of trust reservation interest, and lack of the regulation about the perpetuity of period trust, makes the beneficiary ineffective. Moreover, It is not clear that being taxed to the beneficiary. Thus taxation to the beneficiary should be clear on trust tax law and entity theory should need to be introduced to conduit theory which is current trust taxation. The improvements are followings listed below.

First,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trust taxation which dose not assign compulsory distribution to grantors makes a beneficiary ineffective. To improve this, the perpetuity of period trust and entity theory should be added to the trust taxation.

Second, The current trust taxation does not define the scope of taxation and classify the beneficiary. Classifying the beneficiary can be applied correspondingly trust taxation or regulated as independent system on tax law. Furthermore, The main criteria should be set up granotr's control to determine the earning's actual substantial possession from the trusted asset. To determine whether under grantor's control or not, following are should be applied, designating the beneficiary, authority of change the beneficiary and, adjustment on dividend.

Third, since current taxation system does not have standard on transitional serial interests beneficiary, criteria of grantor's control should be set up first, then transitional serial interests beneficiary's the scope of assessment could be determined.

Forth, under the current trust taxation system, profit and loss distribution standard is not clear to the multiple beneficiary. To improve this profit and loss distribution standard should be set up depending on whole amount of trusted assets. Through this, profit and loss distribution standard should depends on establish rate by case by case on trust contract. The loss rate should be considered depends upon earning rate if earning rate is different to loss rate taxation to beneficiary on trust.

Thus by examine thoroughly beneficiary on trust taxation system, With these effort, Korean trust taxation system would contribute invigorating trust system.

〈Key words〉 income beneficiary, principal beneficiary, multiple beneficiary, perpetuity period of trust, transitional serial interest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ax Science, Kangnam University

** CPA(The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Tax Science, Kangnam University